

# NPT 다시 보기: 3대 축을 중심으로

최 성 주

前 주 폴란드 대사 / 前 유엔사무총장 군축자문위원

**[기획자 註]** 최근 들어 국제사회가 더욱 분열되고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핵무기 사용과 확산의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만 4년이 되어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 등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실현이 요원해지는 가운데, 북한 등 확산 세력은 집요하게 핵무기를 개발함에 따라 NPT와 IAEA를 중심으로 형성된 핵 비확산 레짐(nonproliferation regime)이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핵군축, 핵비확산,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NPT의 3대 축을 살펴보고, 아울러 한국의 핵/원자력 정책에 대한 제언도 제시한다 [기획: 박동준 연구실장(djpark@jpi.or.kr)].

\*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1. 서두

최근 들어, 북한 비핵화는 물론, 핵추진잠수함(원자력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한미 원자력 협상 등 핵(원자력)과 관련되는 용어가 언론에 더욱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핵은 군사적, 그리고 평화적 목적이라는 이중성(dual nature)을 갖고 있다. 핵무기를 감축하고, 핵확산을 방지하는 일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한 필수 명제다. 한편, 작년 10월에 경주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추진잠수함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관건은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 확보다. 또한, 우리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미 원자력 협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원전)로 대표되는 ‘평화 핵’은 에너지 안보는 물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

이하,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중추’로 불리는 NPT의 3대 축 — 핵군축, 핵비확산,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 을 중심으로,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설명해 나가고자 한다. NPT 체제의 경우, 대학에서 1년간 강의를 진행할 정도의 방대한 분량이므로, 그 내용을 최대한 압축해서 요점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2. 본론

### [역사적 배경]

핵무기와 원전의 원천인 핵분열에 관한 연구는 193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는데, 이탈리아 물리학자인 엔리코 페르미(Enrico Fermi)는 1942년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최초의 연쇄 핵분열 반응 현상을 발견한다. 1945년 7월, 미국 뉴멕시코(New Mexico)주에서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 실험(Trinity Test)에 성공한 미국은 전쟁을 속히 끝내기 위해 일본에 핵무기 2발을 투하한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핵을 처음으로 접한 것은 원전이 아닌 무기를 통해서였는데, 이는 세계대전이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1939년 8월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박사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이 독일에 앞서 핵무기를 개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에 따라, 1942년 핵무기 개발 비밀프로젝트인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가 로버트 오펜하이머(Robert Oppenheimer) 박사 주도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과학이 역사와 세계질서를 바꾼 일대 사건’이었다. 전시 상황에서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을 인류에게 최초로 선보인 미국은 핵무기가 추가 확산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여 관련 내용을 극비로 관리한다. 핵무기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챔피언’으로 불릴 정도로 가장 파괴적이며, 그 3대 효과는 폭풍과 열, 그리고 방사능이다.

미국은 핵무기 기술을 독점(nuclear monopoly)하고자 많은 애를 썼지만, 결국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게 되어, 1949년 소련, 1952년 영국, 1960년 프랑스, 그리고 1964년에는 중국이 각각 핵실험에 성공한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경쟁을 가속화하여 1960년대 중반에는 핵균형을 달성하는데, 이로 인해 상호 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에 따른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핵무기 개발을 선도한 미국은 아이젠하워 행정부에 이르러 핵의 평화적 이용을 주창하며, 이를 위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3년 12월 UN 총회 연설을 통해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 구상을 발표한다.<sup>1)</sup> 그 후속 조치로 1957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창설되었고, 그 중추 기능은 핵비확산 시스템의 구축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이다. IAEA의 핵심 활동은 핵물질, 장비 및 시설의 평화적 목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당사국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전조치(safeguards)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 [NPT 개요]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구상은 1950년대 말 서방국가들의 제안으로 처음 등장했는데, 1957년 UN 총회에서 폴란드, 아일랜드 및 스웨덴 등이 제시한 초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다. 1966년 후반 미국과 소련이 조약 초안에 대해 타협함에 따라, 핵무기가 최초로 등장한 지 23

1)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https://www.youtube.com/watch?v=iuIYEtU0mwk>.

년이 지난 1968년 핵무기확산방지조약(NPT)이 채택되었으며, 조약은 전문과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NPT는 조약 당사국을 처음부터 핵보유국(Nuclear-Weapon State, NWS)과 핵비보유국(Non-Nuclear-Weapon State, NNWS)으로 구분한 까닭에 ‘차별적인 조약’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혹자는 이를 “핵 알타 체제(nuclear Yalta)”라고도 칭한다. 현재 NPT 당사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191개국이며,<sup>2)</sup> 인도와 파키스탄 및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NPT에 동참하지 않은 채 핵무기를 개발한 ‘사실상의 핵보유국(de facto NWS)’으로 분류된다.

NPT의 태생적 한계는 당시 핵보유국인 미국, 영국, 소련이 문안 작성을 주도한 까닭에, 이들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그 당시 이미 핵보유국이 된 프랑스와 중국도 미국과 소련의 접근이 차별적이라고 반발하며, 1992년에 가서야 NPT에 동참한다. 현재, 국제평화와 안보를 책임지는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은 모두 핵보유국(NWS)이다. NPT 9조는 “1967년 1월 1일 이전 핵실험에 성공한 국가”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가 1960년,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중공)이 1964년에 핵실험에 성공한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이러한 차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NPT의 가장 큰 기여는 핵무기의 확산을 실질적으로 방지했다는 점이다. NPT가 채택되기 전인 1963년 3월 기자회견 당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아래와 같이 언급한 바 있다. “I see the possibility in the 1970s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ving to face a world, in which 15 or 20 or 25 nations may have nuclear weapons.”

NPT에도 여타 조약처럼 탈퇴조항(10조)이 있는 바, 지금까지 NPT를 탈퇴한 당사국은 북한이 유일하다. 그런데, 2003년 1월 북한의 탈퇴 발표 이후 안보리는 이렇다 할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뒤늦게, 안보리는 2009년 9월 결의 1887호를 채택하여, “NPT 탈퇴시 국제사회가 즉각적으로(without delay) 대응하며, 탈퇴 이전에 발생한 NPT 위반사항에 대해 계속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북한이 NPT 탈퇴 통보 시 근거로 내세운 연례적 한미훈련과 IAEA 특별사찰은 적법한 탈퇴 명분이 될 수 없다. 이처럼 탈퇴의 적법성에 논란이 있는 까닭에, NPT 차원에서는 북한을 비당사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관련’ 2008년 12월 15일자 외교부 보도참고자료의 4항: “북한은 NPT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핵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2003년 1월 NPT 탈퇴 선언 후 조약상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6년 10월 핵실험을 강행, 현재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의한 제재를 받고 있음.

※ NPT 10조에 따라, “NPT 당사국이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최고이익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탈퇴의 권리를 가지며 3개월전 동 비상사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를 조약당사국과 유엔안보리에 통보”하면 탈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북한의 NPT 탈퇴 여부에 대해 국제사회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바, NPT평가회의 시에도 북한의 명패를 의장의 직권하에 보관하는 방식(‘Molnar Formula’)을 통해 북한의 NPT 탈퇴 여부에 대한 논쟁을 회피하고 있음.”

### 3. NPT의 3대 축

#### [핵군축]

핵 군축의 경우, NPT상 관련조항은 6조가 유일하다. 핵무기가 갖는 고도의 전략안보적 속성으로 인해, 핵군축은 국제안보 상황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중 대결 상황은 핵무기 감축 노력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핵보유국들은 자신들의 판단하에 핵무기를 감축할테니, 핵비보유국들은 관여하지 말라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물론, 국제사회가 핵군축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그간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온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1972년 전략무기제한협상(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SALT) 이래 미국과 소련(러시아)은 양자 차원의 핵감축 노력을 전개해왔으며, 그 결과 2010년에 핵탄두를 1550기로 줄이기 위한 New START(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에 서명하고 2021년 2월에는 협정의 5년 연장에 합의한다. 그러나,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2023년 2월 러시아는 New START에의 참여 중단(suspend its participation)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다. New START는 현재 유일한 핵무기 감축 조약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NATO의 대결 상황에서 2026년 2월 5일로 조약이 만료됨에 따라 핵무기 경쟁(nuclear arms race)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중국은 물론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신호를 줄 것이다.

NPT 6조는 아래와 같이 두리몽실한 표현으로 핵군축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조약 성안국인 미국과 소련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Each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undertakes to pursue negotiations *in good faith* on effective measures relating to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t an early date* and to nuclear disarmament, and on a treaty on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핵비보유국 중, 특히 비동맹 국가들은 자신들의 핵비확산 의무이행에 대한 반대급부로 핵무기 군축의 시한(time-bound) 설정을 핵보유국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핵군축 문제는 5년 단위로 개최되는 NPT 평가회의(NPT Review Conference)의 성패를 좌우해온 핵심 쟁점사안이다.

한편, 핵무기 사용의 인도적 영향을 강조하는 국가들이 주도해온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은 2021년에 발효되었는데, 5개 핵보유국과 그 동맹국은 물론,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모두 불참한 상황에서 2025년 현재 당사국은 74개국에 불과하지만, 핵무기의 전면 철폐를 위한 최초의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96년에 UN 총회에서 채택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CTBT)은 수직적 핵확산은 물론, 수평적 핵확산의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는데<sup>3)</sup>, 까다로운 발효 요건(14조에 규정된 44개 원자력 능력보유국 전체의 비준)으로 인해 30년째 정식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3) 수직적 비확산은 핵보유국의 핵무기 축소 및 질적 향상 억제를, 수평적 비확산은 비핵보유국으로의 핵무기 확산 방지를 각각 의미하며, 이 두 개념은 핵무기 보유국 수의 증가(수평적 확산)와 기존 보유국의 무기 고도화(수직적 확산)를 각각 막아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그 목표임.

## [핵 비확산]

핵비확산에 대해 살펴보면, NPT 규정상 5개의 핵보유국이 아닌 절대 다수의 핵비보유국은 1조 및 2조 규정에 의거하여, 핵무기를 개발, 보유 또는 이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곧 비확산 의무이다. 안전조치(safeguards) 체제는 핵비확산의 핵심 이행수단이며, NPT 3조 1항에 의거하여 IAEA가 협정 체결을 위한 법적 권능을 갖고 있다. IAEA 안전조치협정(Safeguards Agreement)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핵비보유국 내 모든 핵물질에 적용되는 전면안전조치협정(CSA, 또는 FSSA), 그리고 당초 NPT발효 이전에 적용되었고 현재는 NPT 비당사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부분적(Item-Specific) 안전조치협정 및 5개 핵보유국에 적용되는 자발적(Voluntary-Offer) 안전조치협정이 그것이다. 이 중, 자발적 안전조치협정은 5개 핵보유국의 협조와 선의에 의존하며, 지정된 시설에 한해 안전조치를 적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모든 핵비보유국은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는데, 당사국의 보고서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IAEA의 현장사찰(On-Site Inspection, OSI)이 핵심 요소다. 이는 국제법규범의 이행을 위해 국가주권을 제약하는 성격도 있어서, 피(被)사찰국과의 잠재적인 긴장 발생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장사찰은 임시(ad hoc)사찰과 일반(routine)사찰, 그리고 특별(special)사찰로 구성된다.

IAEA는 현장사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성과가 1997년에 도입된 안전조치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AP)이다. 1993년에 추가의정서 논의가 시작된 결정적인 배경은 1990년대 초에 드러난 북한과 이라크의 미신고 핵활동이다. 구체적으로, 안전조치 추가의정서는 환경 샘플링 및 신규 원자력시설에 대한 설계정보 등을 조기 확보하여, 미신고 핵활동의 탐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고된 물질 및 장비의 전용(diversion)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전통적인 안전조치 체제의 목적인 반면, 추가의정서의 주된 기능은 ‘미신고 물질과 활동의 부재(absence)’를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추가의정서에 따른 강화된 안전조치는 연구개발(R&D) 및 우라늄 광산 등 핵연료주기(nuclear fuel cycle) 관련 모든 정보와 장소를 포괄한다.

핵비확산 분야의 양대 현안은 북한 및 이란 핵문제이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에 드러난 북한 핵문제의 경우, 핵개발을 집요하게 추구해온 북한이 2003년초 NPT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후,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거쳐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북한은 UN 안보리의 반복적인 요구를 무시한 채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해온 까닭에, 현재 무려 10개에 달하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김정은 정권은 2022년 ‘핵무력정책법’의 공포, 2023년 헌법개정으로 영구적 핵보유 명시 및 2024년 러-북 준(準)동맹 조약 체결 등을 통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 및 관계 개선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그간 한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EU)이 주장해온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CVID)’는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다. 특히,

북한 비핵화는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 및 러-북 군사협력 심화, 그리고 최근의 중-북 관계 개선 조짐 등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환경변화와 상호 맞물려 돌아가는 고차원적 전략 안보 현안이다.

이란 핵문제는 2000년대 초에 나탄즈(Natanz) 및 아라크(Arak) 소재 핵시설의 존재가 드러난 이후 IAEA 및 UN에서 논의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부과 등으로 긴장 국면이 조성되다가, 미국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안보리 상임이사국(P-5)과 독일 및 이란 간의 협정(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타결로 평화적 해결 단계로 진입한다. 그러나, 2025년 1월 재집권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에 이어, JCPOA에서 재차 탈퇴한다. 그리고, 작년 6월 벙커버스터(bunker buster)를 동원한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및 이스라엘-이란의 적대 관계 지속, 그리고 최근 이란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전개 등으로 이란 핵문제의 장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NPT 당사국은 4조 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불가양의 권리(inalienable right)’ 를 갖고 있다. 핵비보유국들은 핵비확산의 대가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반핵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원자력은 진정 위험한 에너지인가? 지금까지 알려진 대표적인 사고는 1979년 쓰리마일섬 원전(TMI), 1986년 체르노빌 원전,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했다. 이 중, 가장 치명적인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에서 발생했으며, 수십 명이 방사선 피폭으로 사고 직후에 사망했다. 2025년 현재, 전세계에서 가동되고 있는 상업용 원전 수는 439기에 달하는데, 원자로와 고준위 폐기물(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안전 확보가 관건이다. 다행히 그간의 기술 진보 덕분에, 제어봉과 격납용기의 안전은 물론, 유사시 자동정지 시스템 등 원전의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었다.

원자력 에너지는 탄소 배출이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보다 훨씬 적은 청정에너지로 알려져 있다<sup>4)</sup>. 이에 따라, 2022년 EU 집행위원회는 방사성 폐기물의 최소화 및 사고 저항성 핵연료기술의 상용화 계획 등을 전제로, 원전을 녹색 분류체계(green taxonomy)에 포함시킨 바 있다. 현재 원자력은 전 세계 저탄소 전력의 약 1/4을 제공하면서, 수력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저탄소 에너지원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을 이룩할 수 없으므로, 상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자력의 기여가 필수적이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원전 확충에 나서는 등 전 세계는 바야흐로 ‘원자력 르네상스’ 에 진입하고 있다. 즉, 대다수의 유럽 국가는 물론, 일본, 미국, 중국 등이 원전 증설과 재가동에 나서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도 원전 재가동에 돌입했으며, 미국은 2050년까지 원전 발전용량을 현재의 4배(약 400

4) 발전원별 1GWh당 탄소 배출량은 석탄(약 888톤)>석유(733톤)>천연가스(499톤)>태양광(85톤)>원자력(29톤) 순임.

GW)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신규 원전 건설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미국의 기술기업들은 AI 데이터센터용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 SMR) 건설에 뛰어들고 있다. 현재 58기의 원전을 운용 중인 중국은 32기를 건설 중이며, 지난 수년간 매년 10기 내외의 원전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있다.

우리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측면을 고려하면서, 예측 가능한(predictable) 원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폐기물의 관리 문제가 핵심인데, 현재의 임시저장 한계시점이 2030년 전후로 도래할 예정이므로, 2025년 9월부터 시행 중인 특별법에 따른 적시 조치가 요구된다. 그 핵심은 저장시설 부지 선정과 지역 수용성 및 장기 로드맵이다. 정권 교체에 따라 원전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될 경우, 중소협력업체 이탈 및 숙련 기술인력 감소(특히, 원자력 전공 기피), 그리고 기술의 연속성 약화 등 원전 생태계에 극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원자력 르네상스’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원전 수출을 확대하려면, 국내 원전 생태계부터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5)</sup>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막연한 공포심을 부추기는 ‘탈원전’ 프레임에서 확실히 벗어나야 할 때다. 반핵 시민단체와의 소통도 적극 전개하면서,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의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의 합리적인 조합(즉, energy mix)이다.

## 4. 결어

원자력은 당초 ‘과학’으로 태어났지만, 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핵)무기’로 첫 모습을 보였고, 1950년대 들어서야 ‘에너지’로 자리 잡았다. NPT의 장래는 3대 축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당사국들의 성의있는 자세 여하에 달려 있다. 우선, 조약 당사국들이 NPT 평가회의에서 도출되는 결론부터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 NPT의 앞날에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도전들이 놓여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안보환경의 악화, 러-북 밀착 이후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철저한 비협조, 중동사태 악화에 따른 이란 핵문제 해결 여건의 불확실성 제고, 그리고 미-중 간의 전면적 대결 심화 등은 핵무기 군축과 비확산을 위한 노력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

핵비보유국은 TPNW 등으로 핵군축을 압박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겠지만,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핵보유국의 핵정책(nuclear doctrine)은 국제정치역학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핵보유국의 참여 없이 핵무기 감축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핵보유국은 핵무기 감축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핵비확산을 견인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특히, 북한 핵문제는 우리의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므로, 외교와 제재 및 유사시 군사적 옵션을 망라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

5) 2026년 1월 16일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 “신규 원전 추가 건설 불가피” 발표, <https://www.youtube.com/watch?v=mtGahEQe28c>.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무엇보다도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대표적인 저탄소 배출 에너지인 원자력(원전)의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NPT의 3대 축은 유엔의 3대 목표인 국제평화와 안보, 인권 및 지속가능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특히, 핵군축과 핵비확산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지속가능발전과 연계된다. 인류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핵군축과 핵비확산을 완성하면서, 안전한 청정 에너지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널리 확산하는 것이다. 원자력이 재생에너지와 함께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기를 바란다.

### 저자 소개: 최성주

최성주 대사는 1980년부터 38년간 직업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외교부 군축비확산과장과 국제기구협력관, 국제안보대사 및 평가담당대사 등을 각각 역임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엔사무총장 군축자문위원(2012년-2017년)과 서울 사이버스페이스총회 준비기획단장(2013년)을 각각 역임하며, 군축비확산 및 사이버, 신안보 현안을 관장한 바 있다. 또한, 최 대사는 알제리 및 폴란드(리투아니아 겸임) 주재 특명전권대사로 근무하였다.

2019년 이후, 최 대사는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을 보좌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에서 외교안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고려대학교 특임교수로 국제법을 강의하면서 신기술 관련 국제학술행사에도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2023년부터 2년간 울산 소재 국제원자력대학원(KINGS)에서 NPT 관련 강의를 진행한바 있다. 최 대사는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데 이어, 외교부에 입부한 후에는 프랑스 파리11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국제공법(유엔 등 국제기구 연구)을 전공하였다.

2026년 1월

저작권자 © 제주평화연구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